

『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 설명

- 존경하는 김혜련 위원장님!
그리고 선배·동료 의원님 여러분!
자유한국당 비례대표 김 소 양 의원입니다.
- 오늘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『서울특별시 보육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』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.
-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.
- 최근 잇따른 어린이집 차량안전 사고 발생과 급식 식자재 부실 관리 적발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영유아 승하차시 잔여인원 여부 점검 등 어린이집 차량의 안전한 운행과 위생적인 급식 식자재 관리 등 관련 법규 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입니다.
- 현행 「서울특별시 보육 조례」는 제21조의2(보육교직원의 책무)에 영유아의 생명·안전보호 및 위험방지에 대한 주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나, 포괄적·선언적 규정으로 인해 정작 보육현장에서는 준수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.

- 이에 본 조례에 영유아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어린이집 차량과 급식에 관련된 조항을 신설하여 보육교직원의 주의 의무를 강화하고, 시장이 이들의 준수 여부를 점검하도록 하여 실질적으로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.

- 아울러 어린이집 차량·급식 관련 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현행 제5장 ‘아동 학대 방지 등’ 을 ‘아동학대 방지 등 아동의 안전 확보’ 로 변경하여 규정의 명확성을 강화하고, 제6장 ‘보육교직원의 처우 및 책무’ 를 신설하여 현행 제21조 및 제21조의2를 포괄하고자 합니다.

-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는 보다 안전한 보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며, 이는 현재 육아를 하고 있는 영유아부모 뿐 아니라 예비부모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 사료됩니다.

-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주시기를 바라며, 본 개정안을 충분히 검토하시어 아무쪼록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

-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감사합니다.